#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879 발의연월일: 2025. 2. 3.

발 의 자:이정문·한민수·이개호

이학영 · 이인영 · 김남근

박 정ㆍ이연희ㆍ문금주

임호선 · 복기왕 · 김현정

홍기원 · 임광현 · 박수현

김원이 · 문진석 의원

(17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)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마약,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마약 등 약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운전자가 약물 복용 후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, 이러한 약물 복용 후 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단속과 처벌 기준도 미비하여 입법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음. 이에 약물 복용 후 운전의 벌칙 수준을 상향하고, 상습적 약물 복용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,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단속 및 측정불응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약물 복용 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(안 제45조제2 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). 법률 제 호

###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간이시약검사 등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. 이 경우
-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,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2조제2항제3호가목 중 "제45조"를 "제45조제1항·제2항"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"제44조

제1항 또는 제2항을"을 "제44조제1항·제2항,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을"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"제6호나목 또는 다목"을 "제6호나목·다목 또는 마목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라.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(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)한 경우
- 마.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(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)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

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제7호"를 "제4호, 제4호의2, 제4호의3, 제7호"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제45조를"을 "제45조제1항을"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의2.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
- 4의3. 제4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경우

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48조의2제4항을 제6항으

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4항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(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)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⑤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을 함께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과 술에 취한 복합적인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 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
- 2.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 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154조제3호 중 "제45조를"을 "제45조제1항을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5조(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	제45조(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
지) (생 략)	지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
	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
	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
	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
	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
	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
	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
	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
	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	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
	였는지를 간이시약검사 등 방
	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. 이 경
	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
	<u>정에 응하여야 한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
	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
	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
	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
	<u>할 수 있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
	되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

#### <신 설>

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

- 제82조(운전면허의 결격사유) ① (생 략)
 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「소년법」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.
  - 1. 2. (생략)
  - 3.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 면허가 취소된 날(제43조 또 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

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
는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
<u>로 정한다.</u>
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
정의 방법, 절차 등 필요한 사
항은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한다.
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
개정법률
제82조(운전면허의 결격사유) ①
(현행과 같음)
②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

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)부터 5년

- 가. 제44조제1항・제2항, <u>제4</u>
  <u>5조</u> 또는 제46조를 위반 (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)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
- 나.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(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 포함한다)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이르게 한 경우

다. • 라. (생 략)

- 4. (생략)
- 5. <u>제6호나목 또는 다목</u>을 2회 이상 위반(제43조 또는 제96 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 도 포함한다)한 경우에는 운 전면허가 취소된 날(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

나. <u>제44조제1항·제2항, 제4</u> <u>5조제1항 또는 제2항을</u>
 다.·라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제6호나목·다목 또는 마목</u> -

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)부터 3년,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

6.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 면허가 취소된 날(제43조 또 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 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)부터 2년

가. ~ 다. (생 략)

<신 설>

<u><신 설></u>

<u>라. • 마.</u> (생 략)

-	
-	
-	
-	
-	
-	
-	
-	
6.	
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라.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
	, , , , – , , – , ,
	라.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
	라.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 을 2회 이상 위반(제43조
	라.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(제43조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
	라.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(제43조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)
	라.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 을 2회 이상 위반(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) 한 경우
	라.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(제43조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)한 경우마.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
	라.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(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)한 경우 모함한다의 한 경우 보다 제2항을 위반(제43조 또는 제96
	라.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(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)한 경우 마.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(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
	라.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(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)한 경우 모함한다)한 경우 보는 제2항을 위반(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)하여 운전

7. ~ 10. (생략)

③ (생략)

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

제93조(운전면허의 취소·정지)

① 시·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(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.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받은 사람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(운 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 면허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 서 같다)를 취소하거나 1년 이 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 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. 다만, 제2호, 제3호, 제3호의2, 제7호, 제8호, 제8호의2, 제9호(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), 제14호, 제16호, 제1 7호,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 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(제8 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

-1	7). Ó	١
14	任告	

7. ~ 10. (현행과 같음)

① (처체コ 가ㅇ)

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 허로 한정한다),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.

- 1. ~ 3의2. (생 략)
- 4. <u>제45조를</u>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

<신 설>

<신 설>

1. ~ 3의2. (현행과 같음)
4. 제45조제1항을
4의2.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
후단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
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
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
<u>경우</u>
4의3. 제45조제2항 후단을 위반
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
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
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
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
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

5. ~ 23. (생 략)

② ~ ④ (생 략)

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 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

제148조의2(벌칙) ① ~ ③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

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

5. ~ 23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개정법률

제148조의2(벌칙) ① ~ ③ (현행 과 같음)

④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 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(형 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)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5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 항을 함께 위반하여 약물의 영 향과 술에 취한 복합적인 상태 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6 년 이하의 <u>징역이나 500만원</u>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 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- 제15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.
  - 1. 2. (생략)
  - 3. <u>제45조를</u> 위반하여 과로·질 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 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

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.

- 1.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 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를 운전한 사람
- 2.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

제154조(벌칙)
1.・2. (현행과 같음)
♀ 제 <i>4</i> 5주제1하으

3. <u>제45조제1항을</u>-----

-----